

정보산업대학원 학칙

제정 : 2000.12.11.
26차 개정 : 2024.6.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대학원은 공학 및 인문.사회계열에 관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하고 연구하는 동시에 기술인의 지도적 인격과 창의적 개발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인류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

제2조 (명칭) 본 대학원은 한라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칭한다)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2장 정원 및 전공

제4조 (전공 및 정원)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구과정은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0.6.14., 2011.4.1., 2013.3.13., 2015.6.17., 2016.2.3., 2022.8.24.)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6.14.)

-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학·군 제휴 협약에 따른 군 위탁생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5조 (삭제) 2011.4.1.)

제6조 (수업방법) 수업방법은 교과목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원격 수업, 팀티칭수업, 특강 등으로, 실습은 현장실습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5.)

제3장 입학

제7조 (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9조 (입학전형방법) ① 본 대학원은 학기별 신입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하되, 당해 연도의 모집요강에 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11.1.)

② (삭제 2010.6.14.)

제10조 (지원절차)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 출신 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4. 사진 3매

제11조 (재입학) ① 제적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개정 2011.4.1.)

②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12조 (편입학) 동일 또는 유사 전공 출신자로 타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를 본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

제13조 (입학제한)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조교 제외)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 연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 동안은 휴직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동계지원) 대학원 전공과 전공이 다른 자에게도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5조 (등록) 원생은 매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금)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휴학)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통산하여 2년(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0.6.)

②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기간(2년)은 ①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1.)

제18조 (복학) 복학은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학업부실, 성행불량 또는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 계속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한 자

제20조 (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수업, 학점 및 수료

제21조 (전과 및 전공변경) ① 전과(전공변경 포함)는 1개 학기 경과 후 제2학기 개강 10일 이내 또는 제3학기 개강 10일 이내 중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2.12.12.)

②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학생의 전과(전공변경 포함)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③ 전과(전공변경 포함)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2.)

1. 신·구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이 확인된 전공변경 신청서
2. 이수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제22조 (수업 및 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제23조 (이수과목) 본 대학원 학생이 매학기 이수하여야 할 과목의 이수학점은 별도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24조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 최저 학점 이외에 학위 논문을 작성할 경우(논문과정)는 논문지도 2학점을,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비논문 과정)는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8.11.13.)

② 매학기 2학점 이상 9학점 이하를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③ 연구과정 원생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25조 (학점인정) ①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군 위탁생이 군교육기관(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 대학원 개설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1.1.)

③ 학·군 제휴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에는 “학·군 제휴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09.11.1)

제26조 (수료) ① 본 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하여는 제22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이수하고, 제24조에서 규정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원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해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수료 후 5년 이내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8.3.21.)

④ 석사과정 수료 5년 이상 경과 시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제6장 학위수여

제27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원 소정의 석사과정 이수 평점평균 성적이 3.0급 이상으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논문지도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로서 학위논문 제출 자격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2.9.12., 2011.4.1.)

제28조 (종합시험) ① 석사학위과정 원생으로서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

1. 소정의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 성적이 3.0급 이상인 자.

②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및 외국어 과목으로 한다. 전공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하며, 외국어 과목은 영어로 한다.

③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신설 2011.4.1.)

제29조 (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의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하는 심사위원이 행한다. (개정 2002.9.12.)

- ② 주심은 심사위원으로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
- ③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④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로서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 (학위수여) ①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과정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4.1.)

1.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 성적이 3.0 이상인 자
3. 소정의 종합시험 및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단, 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3학기 중 지도교수 면담 후 4학기부터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 성적이 3.0 이상인 자. 다만, 6학점 추가 이수 시에는 과목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대상자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자격을 사정한다.
(개정 2011.4.1.)

③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한 자에게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부여되는 석사학위종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4.1., 2016.2.3.)

제7장 조직

제31조 (직제)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

제32조 (전공별 주임교수) ① 각 전공별로 학부(과)장을 주임교수로 한다. (개정 2013.7.3.)

- ② 주임교수는 그 전공분야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학생의 이수과목의 지정,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33조 (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9.12.)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과 개설 전공의 학부(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7.3.)

③ (삭제 2013.7.3.)

제34조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9.12.)

- ① 학생의 입학, 진학과 과정의 수료 및 인정에 관한 사항
- ② 학부와 전공의 설페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④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학위,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⑥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 ⑦ 장학금 및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목개정 2002.9.12.]

제35조 (위원회 회의 및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02.9.12.]

제36조 (임기) 본 전공별 주임교수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학부(과)장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3.7.3.)

제8장 상벌

제37조 (장학금지급)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탁월한 재질과 성품을 갖추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대학원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공개강좌

제38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마다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0장 학칙개정

제39조 (개정안 공고) ① 학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원에서 개정안을 입안한다. (개정 2024.6.5.)

② 총장은 학칙개정안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 및 대학원 구성원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의견 제출에 따른 기간, 제출처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개정안 공고 시 함께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4.7.17.]

⑤ 사전 공고 종료 후 개정안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신설 2024.6.5.)

제40조 (심의 및 공포) 사전 공고하여 조정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이를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24.6.5.)

제41조 (보고) 총장은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학생정원
 2.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3. 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전과, 자퇴, 제적, 유급, 수료, 졸업, 징계
 4. 교과목 이수단위, 학점인정
 5.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4.7.17.]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종합시험) 및 제30조(학위수여) ①의 3항 중 “단, 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3학기 중 지도교수 면담 후 4학기부터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 성적이 3.0 이상인 자. 다만, 6학점 추가 이수 시에는 과목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라는 2011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당시 “테크노경영학전공”이 “경영학전공”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소속 재적생은
 - ① 2011년 8월 졸업(수료)자는 변경 전 전공으로 졸업(수료)한다.
 - ② 2012학년도 이후 졸업(수료) 대상자부터 변경된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변경 전 전공으로 졸업(수료)할 수 있다.
3. (전공명칭 변경) “레저관광경영학전공”을 “관광경영학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2.3.)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0.6.14.)(개정 2016.2.3., 2018.11.13., 2021.6.8., 2022.8.24., 2023.11.28., 2024.5.25.)

전공 및 정원

대학명	과정	전공	정원	비고
정보산업 대학원	석사	기계·자동차공학전공 전기·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뷰티디자인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통일경제학전공 문화관광콘텐츠전공 AI정보보안전공 미래자동차공학전공	21명	

<별표 2>(신설 2011.4.1.)(개정 2016.2.3., 2018.11.13., 2021.6.8., 2023.11.28., 2024.5.25.)

수여 학위

과정	계열	전공	수여학위
석사학위	공학계열	기계·자동차공학전공	공학석사
		전기·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AI정보보안전공	
	미래자동차공학전공		
인문·사회계열	경영학전공 문화관광콘텐츠전공	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
		경찰행정학전공	경찰학석사
		관광경영학전공	관광학석사
		통일경제학전공	통일경제학석사
예체능계열	뷰티디자인학전공	미용예술학석사	